

원주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4.06.21

담당부서 :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033-760-2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주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원주학술정보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1한다.

제3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2장 제 재

제4조(훼손 및 무단반출) ①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한 후 그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 및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절취해서는 안 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개월 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자료 및 물품 정가의 5배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학기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정가의 5배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주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 또는 전공 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하거나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훼손하거나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열람증 및 계정의 대여) ① 열람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증으로 도서관출입, 열람좌석발급 및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원주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 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열람증은 학생증, 신분증, 도서관 출입증, 도서 대출증을 포함하며, 계정은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제6조(소음 등) ① 열람실에서 고성방가,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지하며 카세트, 알람시계, 계산기 등을 사용한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 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7조(식음) ① 원주학술정보원장이 지정한 음식물 외에 어떠한 음식물도 도서관 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휴게실 등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도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음식물만 취식 가능하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8조(컴퓨터 사용) ① 정보검색용 컴퓨터는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컴퓨터장비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9조(흡연) ① 도서관은 금연 건물로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한다.

제10조(게시물 부착) ① 게시물은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②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허가받은 장소 외에 게시한 게시물, 허가받은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을 위반한 경우, 직원은 즉시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수반되는 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테이프 등 특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인쇄물 및 물품의 배포나 판매) ①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이나 물품을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배포, 판매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하며 해당 물건의 수거, 접착제의 제거 등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방해 행위) ①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처벌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자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13조(거짓 반납) ① 대출 및 반납 시 전산처리내역 확인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모든 업무는 전산정보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전산처리내역 상 미반납 상태에서 도서관 내 도서 존재 등을 근거로 반납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개월 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1학기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제14조(도서관 부정 이용) ① 도서관 출입 시 관리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증 접촉 없이 출입하거나, 들어온 기록 없이 외부인 자격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도서관 이용 금지 기간 중 출입하거나,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 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15조(세미나실 예약부도) ① 세미나실 예약신청 후, 신청자는 예약일시까지 예약확인 또는 예약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해 15일 내 3회 위반한 경우, 14일간 자리배정 및 세미나실의 이용을 금지한다.

제16조(위반 내역의 관리) ① 위반자에 대한 이용 금지 기간의 적용 시기는 원주
학술정보원장이 정한다.

② 제재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